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함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발 의 자: 성함제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규남, 김성준, 남창진,
박승진, 박철성, 송도호,
유정희, 이원형, 이종태,
임규호, 임만균, 최민규,
최재란, 한 신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지하안전위원회가 심의 자문하는 사항에 ‘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 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‘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’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에 ‘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함(안 제5조제5호).
- 나.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로 확대함(안 제6조제1항).
- 다.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10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)”을 “(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”를 “조사에서 또는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반침하나 공동이”로 한다.

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호에 따라 제12조제3항·제4항 및 제6항 등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조사·분석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③ 소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시 관련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소위원회는 관련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게 필요

한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	제5조(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5명</u>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<u>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</u>) ①·② (생략)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<u>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.</u> ④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<u>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</u>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 <u>조사에서 또는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지반침하나 공동이</u> ----- 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4조(<u>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</u>

회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호에 따라 제12조제3항·제4항 및 제6항 등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 조사·분석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고예방 현장 조사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③ 소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시 관련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소위원회는 관련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
제14조 (생 략)

제15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 중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인원 “10명”을 “25명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6조(위원회의 구성)

나. 전제

-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6~2030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제6의 위원회는 25명으로 전제하여 현 인원(9명)보다 16명 증원되는 것으로 전제
- 2025년 서울시 예산서(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)를 참고하여 위원 1명당 수당을 200천원으로 전제하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16,000천원(연평균 3,2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지출						
	○ 제6조(위원회의 구성)	3,200	3,200	3,200	3,200	3,200	16,000
	소계(a)	3,200	3,200	3,200	3,200	3,200	16,0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3,200	3,200	3,200	3,200	3,200	16,00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 중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인원 “10명”을 “25명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비용(합계) ≍ 16,000천원(연평균 3,2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6조(위원회의 구성)	3,200	3,200	3,200	3,200	3,200	16,000
	소계(a)	3,200	3,200	3,200	3,200	3,200	16,0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3,200	3,200	3,200	3,200	3,200	16,000

- 위원회(16명 증원) = 200천원 × 16명 × 5년
= 16,000천원